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제목 (내용 포함)	A와 B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전문 (체결 취지 등)	A와 B는 상호 발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총칙조항 (목적, 용어 정의 등)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체조항 (당사자간 주무부서 지정, 협력의 실질적 내용 등)	제2조 (기본 운영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 (협력분야) 양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2.	
해석조항 (규정의 해석 기준 등)	3.	
	제4조 (인력 활용 및 교류)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활용 및 교류를 할 수 있으며 방법은 양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학술정보 교류)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학술 및 기술정보의 공동 활용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 (자문) 양 기관은 상호 간 업무상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효력 및 해지 조항 (업무협약의 효력 및 해지 등)	제7조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해석)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양해각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0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개정조항 (내용의 변경 절차 등)	③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 00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개정) 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기타 부칙 (효력발생시기, 비밀유지 등)	제11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운영)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연락담당자를 둔다.	

A(체결기관)
(체결권자)
(서명)

B(상대기관)
(체결권자)
(서명)